

#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규정

2009. 4. 21. 제정

2014. 12. 12.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 조의 2 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에 둔다. (신설 2014.12.12.)

제 2 조 (사업) 센터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각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
2.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우수한 연구 인력의 양성
3.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
4. 정부, 기업체 등 외부에서 위촉하는 연구사업
5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3 조 (소장·부소장) ①센터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 부소장 2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공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 (개정 2014.12.12.)

③소장은 공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4.12.12.)

제 4 조 (조직) ①센터에 기초연구부, 응용연구부 및 행정실을 두며, 기초연구부에는 시스템소프트웨어연구실, 보안연구실, 이동네트워크연구실을 둔다.

②시스템소프트웨어연구실은 멀티코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, 배터리 및 저전력 관리 기술 연구, 임베디드 스토리지 기술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보안연구실은 네트워크 보안 연구, 센서 네트워크, 홈 네트워크,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이동네트워크연구실은 인터넷, 무선통신망, 고속통신망 연구, 인터QoS(Quality-of-Service) 및 트래픽 엔지니어링 연구, 트랜스포스 프로토콜 연구,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 연구 수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응용연구부는 기초연구부의 요소기술을 전력, 통신, 국방, 자동차 제어, 가전 등에 응용하기 위한 국내외 대학교, 연구소, 기업과의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⑥행정실은 연구 관리, 회계, 외국인 교수 행정지원과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5 조 (부장 또는 실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 또는 실에 부장 또는 실장을 둘 수 있다. 부장 또는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4.12.12.)

②각 부장 또는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6 조 (연구위원 등) ①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4.12.12.)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 (연구원 등) ①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8 조 (행정인력) ①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9 조 (운영위원회) 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공과대학장,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(개정 2014.12.12.)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자문위원회) ①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11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과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12.12.)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 12 조 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센터의 경비는 연구기금, 외부 지원금, 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.

②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4.12.12.)

제 13 조 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4.12.12.)

부 칙(2009. 4. 21. 제정)

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12. 12. 개정)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